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3. 11 선고 2019가단21611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김수정

피 고 A

변론 종결 2020. 10. 8.

판결 선고 2021. 3. 11.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지분 3분의 1에 관하여 2015. 6. 13. 체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114,573,3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4,573,3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44301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3,044,987원 및 그 중 159,769,117원에 대하여 2007. 9. 21.부터 2007. 12. 20.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8. 11.10.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7. 31. 확정되었다.

나. B의 어머니인 C가 사망함으로써 망 C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자녀들인 피고와 B, D에게 상속되었는데, 피고는 2015. 7.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C의 상속인들이 2015. 6. 13.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한다)를 할 당시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반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4. 6. 채권최고액 42,000,000원, 근저당권자 E단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1. 5. 22. 채권최고액 36,000,000원, 근저당권자주식회사 F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는데, 2015. 8. 10.과 2015. 7. 29. 위 각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다만 위 E단체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03. 4.10., 주식회사 F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02. 3. 9. 모두 변제된 상태였다), 2017.7.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근저당권자 G조합, 채무자H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 I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이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별수익 주장에 대한 판단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이 나 특별수익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되고(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참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도 위와 같은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피고는 B이 부모님들로부터 특별수익한 재산을 고려하면, B이 사실상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B의 특별수익 재산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 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2003다40286 판결 참조).

피고와 B 사이에 2015. 6. 13.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 중 B의 상속분인 1/3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인 2017. 7.10. G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¹⁾

따라서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한다. 이 법원의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 종결당시 시가는 343,720,080원 상당이므로, B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14,573,360원(=343,720,080원 × 1/3, 원 미만 버림)이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공동담보가액이 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5. 6. 13.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는 114,573,3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 게 114,573,3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오윤경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토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 285.5㎡
2. [건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110.815㎡
2층 86.43㎡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의 경우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모두 변제된 상태였으므로, 이후 위 각 근저당권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